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88
----------	-------

발의연월일 : 2026. 9. 15

발 의 자 : 김형연 · 서왕진 · 김재원

정춘생 · 황운하 · 백선희

박은정 · 김선민 · 차규근

신장식 · 김준형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사는 법적 분쟁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판사가 단순히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들어 주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AI시대를 맞이하여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반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있는 통찰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재판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임용 과정에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소양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공익활동 실적 등 다양한 자질 역시 철저하게 검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고, 법조경력 을 구간별로 나누어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

며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함. 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1명의”를 “13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2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전 단 중 “각계”를 “문화·교육·사회복지·심리 등 각계”로, “2명”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3. 제42조의2에 따른 판사 임용 기준의 수립 및 운영과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력 구간별 임용 절차·비율에 관한 사항

다만, 공익법률 부문(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법률사무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2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개선 상황을”을 “개선 상황, 제42조의2에 따른 임용 기준의 운영 현황 및 결과를”로 한다.

⑤ 판사를 임용할 때에는 법조경력을 다음 각 호의 구간으로 구분

하여 구간별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5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10년 미만
3. 10년 이상

⑥ 제5항 각 호의 구간별로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 항목의 비중과 방법을 달리하되, 법조경력이 긴 구간일수록 법률지식 및 직무수행능력은 법관으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사회적 경험과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

⑦ 제5항 각 호의 구간별 임용 비율은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제5항제3호의 구간에서는 임용하는 인원은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구간에서 제6항에 따른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판사 임용 시 인성 및 공익활동의 종합평가) ① 판사를 임용할 때에는 법률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익에 대한 헌신
2. 청렴성과 법조윤리의 준수 등 도덕적 소양
3. 당사자 등 타인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 경청 및 소통 능력

4.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기간 중 공익활동 실적

- ② 제1항제4호에서 “공익활동”이란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법률구조, 국선변호, 공익소송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활동을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정치적 견해, 사상, 종교, 출신지역·학교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절차 및 평가 항목별 배점은 임용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배점의 합계는 총 배점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법관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제25조의2에 따른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제공하며, 평가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세부 기준·방법·절차 및 공익활동 범위·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판사 임용 절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관인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에 따른 구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으로 증원되는 위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생략)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4. (생략) 5. (생략)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1명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2. (생략)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u>2명</u> <u><단서 신설></u>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42조의2에 따른 판사 임용 기준의 수립 및 운영과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력 구간별 임용 절차·비율에 관한 사항</u>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 <u>13명의</u> ----- -----. ④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2명. 다만, 공익법률</u> <u>부문(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사</u> <u>회적 약자의 권리보호 또는</u> <u>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법률사</u>

4. (생 략)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u>각계</u>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u>2명</u>. 이 경우 <u>1명</u>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 ④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무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u> 4. (현행과 같음) 5. -----<u>문화 · 교육 · 사회복지 · 심리 등 각계</u>----- ----- -----<u>4명</u>. ----- <u>2명</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임용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관사를 임용할 때에는 법조 경력을 다음 각 호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u> <u>1. 5년 이상 7년 미만</u> <u>2. 7년 이상 10년 미만</u> <u>3. 10년 이상</u> ⑥ <u>제5항 각 호의 구간별로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 항목의 비중과 방법을 달리하되, 법조경력이 긴 구간일수록 법률지식 및 직무수행능력은 법</u>
--	--

<신 설>

⑤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관으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사회적 경험과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

⑦ 제5항 각 호의 구간별 임용 비율은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제5항제3호의 구간에서는 임용하는 인원은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구간에서 제6항에 따른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임용제도 개선 상황, 제42조의2에 따른 임용 기준의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2(판사 임용 시 인성 및 공익활동의 종합평가) ① 판사를 임용할 때에는 법률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외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익에 대한 헌신

2. 청렴성과 법조윤리의 준수
등 도덕적 소양

3. 당사자 등 타인의 처지에 대
한 이해와 공감, 경청 및 소
통 능력

4.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기간 중 공익활동 실적

② 제1항제4호에서 “공익활동”
이란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사
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법률구
조, 국선변호, 공익소송 등 공
익 증진에 기여한 활동을 말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정치
적 견해, 사상, 종교, 출신지역
· 학교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
방법 · 절차 및 평가 항목별 배
점은 임용 절차가 개시되기 전

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배점의 합계는 총 배점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법관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제25조의2에 따른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자료로 제공하며, 평가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세부 기준·방법·절차 및 공익활동 범위·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